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02
----------	-------

발의연월일 : 2025. 9. 18.

발 의 자 : 주진우 · 박준태 · 김 건
신동욱 · 유용원 · 박상웅
추경호 · 조배숙 · 김승수
김도읍 · 유상범 · 김성원
김소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불안요인이 되고 있음. 이 범죄는 일단 발생하면 피해자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겪게 되므로, 국가 차원에서 예방적·사후적 관리가 강력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검사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실제로는 재범 가능성이 크더라도 부착명령 청구가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다만, 일정한 경우에만 부착명령 청구를 의무화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검사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부작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아동을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자의 사회 복귀 이후에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하여, 학부모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개정).

법률 제 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청구할 수 있다”를 “청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 구) ① (생 략)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 구)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 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 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u>청구할 수 있다. 다만,</u> <u>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u> <u>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u> <u>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u> <u>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u> <u>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u>	② ----- ----- ----- ----- ----- <u>청구하여야 한다. <단서</u> <u>삭제></u>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